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87
----------	-------

발의연월일 : 2026. 1. 7.

발 의 자 : 서영석 · 윤준병 · 허종식  
진성준 · 김주영 · 이해식  
최혁진 · 한정애 · 소병훈  
김남희 · 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민간 구급차 전수 점검 결과('25. 12. 8.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147개의 민간 구급차 중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라기보다는 구급차가 실제로 현행법상 허용된 범위에서 적절히 운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서, 용도 외 사용 등 구급차의 위법한 운행 가능성을 높여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운행기록 등의 서류만으로는 구급차의 정확한 운행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구급차 운행 점검을 기존의 서류 기반 관리 체계에서 전산 관리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구급차의 운용자가 구급차 운행 시 차량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여 구급차의 위법한 운영을 방지하고 응급환자 등의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6호의2, 제47조제2항제1호의2 및 제49조의2 신설 등).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9조의2에 따른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제4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이하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전송의 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경우

제60조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u>&lt;신설&gt;</u></p> <p>7. ~ 11. (생략)</p> <p>②·③ (생략)</p> <p>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생략)</p> <p>② 구급차에는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과 이송 중 응급처치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장착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관하여야 하며, 보건복</p>	<p>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6의2. 제49조의2에 따른 구급차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u></p> <p>7. ~ 11.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지부장관이 해당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생략)

<신설>

2. 3. (생략)

③·④ (생략)

<신설>

-----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으로 전송하기 위한 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  
비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  
의 구축 등) ①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구급차의 위치정보  
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스템(이하  
“구급차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급차의 운용자는 구급차  
를 운행하는 경우 해당 구급차  
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구  
급차위치정보시스템에 전송하  
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구급차위치정  
보시스템의 구축 및 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 전송의 기준·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략)

<신설>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4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전송한 자